



# 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유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본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끝.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17개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전국 초,중,고등학교,경찰청 및 16개 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 1개 시,도청(산하 기초단체), 전국 15개 손해보험사(산하 보상센터),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렌터카 공제조합)

차장 손희상

부장 대결 2017. 6. 8.  
김필연

협조자

시행 교통복지처-1301 (2017. 6. 8.)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울곡동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

전화번호 054-459-7315 팩스번호 0502-384-5450 / [hssohn@ts2020.kr](mailto:hssohn@ts2020.kr) / 대국민 공개

국민행복 정부3.0, 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다양한 정서적 지원들을 통해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 심리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활동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공단에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 **신청기간** : 4 ~ 6월경
- **사업기간** : 7월 ~ 11월

### 유자녀 체험캠프 운영

- **사업내용** : 스키강습, 긴급구조교육 등 각종체험활동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가정 유자녀(초3~중3)
- **신청기간** : 12월
- **운영시기** : 1월

### 유자녀 멘토링 운영

- **사업내용** : 유자녀와 대학생들 1:1 매칭하여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청소년 기의 올바른 감성적 지원 활동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가정 유자녀(초3~중3)
- **신청기간** : 2월경
- **사업기간** : 3월 ~ 12월

### TS 희망봉사단

- **사업내용** : 전국적으로 조직된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방문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공단에 희망봉사단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 **신청기간** : 1월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사업내용** : 중증후유 장애인 가정에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성 지원(문턱개선, 화장실 보수 등)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지원자 중 중증후유장애인 가구
- **신청기간** : 4 ~ 6월경
-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지원대상가정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공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1인 1회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FAX, 방문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조화, 종이컵 등 일회용품)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또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다가 사망한 지의 가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해당 지역본부/지사 또는 본사로 전화 신청 TEL. 05-4459-7302~6, 15
- ※ 신청한 가족이 요청한 장소로 개별 배송

### 경제적 지원기간 및 연장(계속지원) 신청 안내

- **지원기간** : 1년 단위(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2년 단위(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지원기간 만료 전 계속지원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 전년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 열람 동의"(전화통화)만으로 지원신청 가능



### 신규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 발급안내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종류	발급기관	대상자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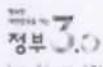
#### 후유장애 증명서류

종류	발급기관	대상자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중증후유장애인

※ '1. 3. 30 이후 등록사부터 장애등급 결정서를 추가하여 장애등급 확인

####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증명서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
2.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3. 피부양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현재 중증후유장애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더라도 부양 의무재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지원 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재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자세한 사항은 www.is2020.kr 참고)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1급 내지 4급에 해당 하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월 20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자 본인 또는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월 20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1부

**초·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고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및 피해당사자 본인

- 지원기준
  - 성적 장학금 (중·고급)
    - 전과목 성취평가로 산출되는 경우 : 과목별 성취도 평가 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혼합 산출되는 경우 : 보통교과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학 수의 1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전문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특기 장학금 (초·중·고)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헌보이 등에서 특출한 재능을 인정받았거나, 호형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상을 수상한 자(단,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수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교육장,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
  - 학교장 추천 장학금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 지원금액
 

대 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교	분기 20만원	4, 5, 10, 11월
중 학 생	분기 30만원	
고등학교	분기 40만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3. 2 ~ 4. 30 / 9. 1 ~ 10. 31 (연2회)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대출금액 : 월 20만원(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졸업 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임, 위) 사본 1부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졸업 또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통장에 입금(적립)하면 정부가 월 6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매칭(적립)하여 지원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자격증 취득, 주택 임대차 계약, 취업(창업) 등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전 초기출금 :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생인 자에 한함) 1부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현황

지역본부(지사)	전 화	팩 스
서울지역본부	(02)309-5177	(02)309-2012
경인지역본부	(031)298-5008	(031)298-5025
충북지역본부	(042)933-4323	(050)2084-5396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94-3814	(053)794-3804
부산경남지역본부	(051)324-2464	(051)324-2465
호남지역본부	(062)606-7638	(062)606-7645
인천지사	(032)833-6700	(032)833-5002
경기북부지사	(031)837-7901	(031)837-7605
충북지사	(043)265-9575	(043)262-6551
경원지사	(033)261-5000	(050)2384-5384
경남지사	(055)758-5949	(050)2384-5482
울산지사	(052)256-9375	(052)256-9376
제주지사	(064)755-3110	(064)723-3120
전북지사	(063)214-4743	(050)2384-5433

본사 | 경북 김천시 혁신로 17(울곡동)  
전 화 : 054-459-7301~7309

-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등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a2020.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 무료형 : 청소년 피해자 지원안내 : ①번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 ②번